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13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김도읍 • 권성동 • 박대출

구자근・조승환・곽규택

주진우 • 이성권 • 정희용

조지연 • 박형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,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.

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·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 ·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제1조(「관세법」의 개정)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피성년후견인
- 제2조(「관세사법」의 개정)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2. 피성년후견인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5조(운영인의 결격사유) 다음	제175조(운영인의 결격사유)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·운	
영할 수 없다. 다만, 제6호에	
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	
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	
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	
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	
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·운영	
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	<u>2. 피성년후견인</u>
<u>인</u>	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5조(결격사유)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	
세사가 될 수 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	2. 피성년후견인
<u>견인</u>	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